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9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2)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8)

상정된 안건

- | | |
|--|----|
| 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 2 |
| 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 19 |
|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3) | 24 |
|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2) | 24 |
| 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 25 |
| 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 25 |
| 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8) | 25 |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6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께서 참석하였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소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때 한 분당 각 5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10시11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제1항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수사요구안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검토보고입니다.

수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한 의결을 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의안으로 이해됩니다. 현법재판소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국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요구안에 따른 상설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 및 활동에 관한 개요에 대해서는 5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요구 대상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현재 법무부는 일체의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기본적으로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기관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관께서는 지금 중립성·공정성에 대해서 법무부에 보고만 안 하면 담보가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언론 보도에도 있듯이 지금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이

어찌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특수본부장이겠지요—본부장과 여러 가지 근무 인연이라든가 사적 인연으로 얹혀져 있다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꼭 그것이, 법무부에 보고 안 하는 것이 중립성·공정성을 담보한다고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겠지만 차관께서도 지난번 우리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할 때 판사인 제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피의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해도 되는지 굉장히 또 우려가 들었습니다. 마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을 답습을 하시던데, 제가 검찰청에서 나온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의할 때도 차관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그런 체포동의안 설명은 피의사실 공표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반성적 고려를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께서 토론해야 할 시간인데요.

박균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박균택 위원 법무부차관님, 지금 그 말씀……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박균택 위원 아닙니다. 토론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토론이면 한 번, 5분…… 5분 넣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한 번에 5분씩 하면 여러 개를 할 텐데 시간이 되시는 건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이견이 있는 법안은 1안인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차관님, 방금 그 말씀은 법무·검찰에 몸을 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도리상 하시는 말씀일 뿐 이 자리에서 그게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솔직히?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것이기는 하지만 용어부터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의혹 사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고 영상이 있고 관계자들의 자수·자백이 있고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것을 의혹 사건이라고 쓰는 것은 너무 한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저는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의혹 사건을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다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법률안에는 ‘내란 행위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보면 1호부터 11호까지 나열을 해 놨는데 수사 대상을 보면 다 ‘의혹 사건’이라고 써 놨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수사요구안을……

○박균택 위원 저는 의혹 사건이 아니고 ‘범죄 혐의 사건’이라고 좀 제대로 된 용어를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범죄 대상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여기도 저는 내란범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내란

범죄를 일으킬 걸 알면서 만찬장에 참석을 해서 미리 연락을 했고 그리고 계엄군이 들어올 것을 알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대기시키지 않고 당사로 빼돌리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탄핵을 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밖으로 빼돌리면서 탄핵 표결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사전적·사후적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대표의 내란 가담 혐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이 범죄 수사 대상 안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먼저 법무부차관이……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유상범 위원 아니, 차관님을 부른 게 아니라 국회 체포동의안에서 체포 동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범죄 혐의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했다, 그걸 가지고 피의 사실 공표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그 피의사실을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지, 그와 같이 공식적으로 국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구체적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행위를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에 또 우리 당 의원에 대한 부분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와서 했을 때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 가지고 객관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난한다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부당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것은 부당한 압력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적절치 않다는 것, 저는 이거 반드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존경하는 박균택 위원께서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첫째, 저도 그날 연락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이미 계엄군이 도착해서 출입구를 막았다고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 상황에서……

○서영교 위원 들어올 의지가 없었던 거지.

○이성윤 위원 담을 넘어와야지요.

○유상범 위원 들어 보세요. 그렇게 대단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 담을 넘어온 사람들은……

○주진우 위원 아니, 말씀……

○유상범 위원 들어 보세요. 이미 계엄군이 출동하고 출발시간이 늦었고 김승원 간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담을 넘어 들어간 의원들도 이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와 가지고 당사로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마치 무슨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찬성하듯이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에서 계엄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했지 않습니까? 이 비상계엄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하는 그지적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추경호 대표, 해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경호 대표가, 그사이에 이미 중간에 본회의장과 다른 본관을 계엄군이 들어와서 차단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현장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투표가 끝나고 추경호 대표에게 빨리 와라, 당사로 와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추경호 대표가 당사로도 오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봉착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국회 본관에서 모여 있는 것이……

○서영교 위원 시간 안 재나요?

○행정실장 정진욱 소위는 원래 타이머가……

○서영교 위원 5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시간 재셔야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직 5분 안 됐네요.

○행정실장 정진욱 타이머를 소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계엄군이 출동했으면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국회 본관이 안전하겠습니까 당사가 안전하겠습니까? 계엄군이 출동하면 당사가 훨씬 불안합니다.

○이성윤 위원 국회가 더 불안한 게 아니고요?

○유상범 위원 마찬가지예요. 출동을 했으면 어디가 더 안전이 위험하겠어요? 여기는 경비도 있잖아요. 그러나 당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게 다 생중계가 됐는데 당사보다 안전하다니요?

○서영교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유상범 위원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영교 위원 역사에 다 기록이 되니까……

○이성윤 위원 한동훈 대표도 저희 당에서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좀. 군인들이 총칼을 든 채 국회 들어와서 창문을 깨고 막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당사보다 안전하다는 말씀이 그게 말이 됩니까?

○유상범 위원 내 얘기는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계엄군이 출동……

○소위원장 김승원 지금 이 회의를 같이하는 것도 저는 좀 모욕감을 느낍니다. 어느 정도껏 하세요.

○유상범 위원 모욕감을 느끼는……

○소위원장 김승원 모욕감을 느끼지요, 동료 의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법조인이면 이게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명백히 아실 텐데 뭐를 했습니까, 도대체? 당사 가서 앓아있고!

- 서영교 위원** 막은 거지.
- 유상범 위원** 뭘 막아요?
- 주진우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시지요.
- 유상범 위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 이성윤 위원** 동료 의원들 체포하다가 방첩사령부에 가둔다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 소위원장 김승원** 이런 말씀 안 나오도록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 서영교 위원** 아니, 감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기를 못 든 거겠지.
- 유상범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 서영교 위원** 아니라고, 잘못된 조치라는 것은 알겠지만 반기를 못 든 거겠지, 감히.
- 유상범 위원** 해제를 요구를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알았으면 반기를 들었지요.
- 서영교 위원** 그 뒤에도 충분히 절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 이성윤 위원** 안 다음에 들었으면 되지요. 왜 탄핵에는 참석 안 하시냐고.
- 주진우 위원** 토론 좀 마무리합시다.
- 서영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보여 주시고 그래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도 정리할 것 아닙니까?
- 유상범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무슨 공범이니 뭐니 하면서 혐의를 넣는 주장을 하니까 내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 소위원장 김승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발언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유상범 위원**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소위원장 김승원**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유상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이 법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올린 것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도 소위 말해서 상설특검법이 나왔을 때 주장했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던 특검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여당을 배제하는 법안을 개정한 것에 반대했고 이 법안도 그 규정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동의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교 위원** 의견 이야기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 서영교 위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대한민국이 남북 대치 중인데 군대들을 다 끌어들여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이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어요. 이것은 비상계엄도 잘못됐지만 국회라고 하는 기관의 능력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오늘 과연, 법무부차관 와 계시지만 윤석열 정권에 그렇게 동조하고 여러분 전부 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날 법무부장관이 그 현장에 갔어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현장에 갔어요. 그래서 그것 심의에 동의했어요. 다 공범이에요.

국민의힘당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박근혜 탄핵될 때 직무정지될 때 황교

안 총리 보고 하라 그랬다. 이보세요.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때린 윤석열과 박근혜는 질이 달라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공범이에요, 법무부장관도 공범이고요.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지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더 벌일지 모르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하고 있지요?

저는 국힘당 의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야 정치적 이익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막아야 되는 거고 바로 구속시켜야 되고 바로 탄핵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비상계엄 황당하게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던 김용현이 그것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 둘이서?

저는 국힘당에서도 이것 전혀 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모르게 했는데 왜 보호하지요? 왜 탄핵에 투표하려 안 들어오지요? 그리고 왜 안 들어가게 의원총회를 해서 막지요?

이게 역사에…… 여러분, 저는 유상범 위원님부터 그리고 주진우 위원님부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라는 게 아니라 국민 편에 서야지요. 국민의 국회의원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이 아니잖아요. 법무부도 검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으면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당 대결은 또 그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다음 정당 대결을 생각해서 그런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별검사…… 지금 검사 믿을 수 있어요? 제발 잘하세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김건희 추가조작을 무혐의 치고 변호사 하듯이 한 것 그게 다 징조였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때렸을까요? 짹 다 끌어내고 한동훈부터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한동훈 잡아들이면 그러면 여러분은 동조해서 안 잡아들였을까요? 우리 다 잡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이 상황이…… 윤석열 나라입니까? 윤석열·김건희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 것까지 막지요?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탄핵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탄핵 못 해서 탄핵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아요? 또 갑니다.

이제 두 분이 바뀌셔야 돼요.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수사요구안의 기본적인 수사를 상설특검이 해야 된다는 내용 동의 안 하면 안 돼요. 이것 어떻게 역사에 무슨 저걸 하려고 동의를 안 하십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좋자고 하는 겁니까?

오늘 707단장이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것 못 보셨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하지요? 윤석열, 윤석열과 이 비상계엄을 같이 동조한, 제일 중요한 수괴 윤석열 그리고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박성재 법무부장관 그리고 비상계엄이 떨어진 다음다음 날 법무부장관, 이상민 그리고 이완규. 박성재, 이상민, 이완규가 또 안가에서 모였다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서 뭐라고요? 제대로 못 만나서 만났다고요? 그게 법무부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째려보면 됩니까?

○**유상범 위원** 얼마나 모욕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장관을?

○**서영교 위원** 뭐라고요?

○**유상범 위원** 장관을 상대로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 옆에서?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이 거기 나와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그런다고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째려보면 됩니까?

○**유상범 위원** 그럼 모욕적인 말은 해도 돼요?

○**서영교 위원** 이제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는 이 요구안 법안은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탄핵을 하면 이재명에게 정권을 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탄핵을 막기 위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못 들어가게 한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권성동, 추경호…… 또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 나경원, 권성동, 추경호 그리고 김기현, 윤상현 이런 사람들은 국회 내에서 탄핵을 막은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주어진 임무는 빨리 탄핵을 의결하는 일에 동참하고 이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요구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서로 나서는데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리고 이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범위예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 범위를 건드리거나 하지 말고 경찰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 특별검사가 모든 걸 수사 지휘하고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요구안을 바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위원님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그 자리에 와 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하시지요.

○**주진우 위원** 법치주의라는 건 범용적으로 어떤 케이스든 다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법안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이미 검찰, 경찰 또 공수처에서 다 수사팀은 꾸려져 있고, 현재 상설특검에서 법으로 정한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져 있고 이미 수사에 착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복수사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영교 위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다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미 유죄라고 확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의 기능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재판받고 있지만 무죄 추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관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예외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게 유죄라고 확신하고 있는 순간, 공정한 수사체계라고 하는 것은 예단 없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객관성 있고 공정한 수사절차 체계가 되려고 하면 특검을 누가 지명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항상 특검을 여야 합의로 했던 이유는, 굳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항상 특검이라는 것은 여든 야든……

○**서영교 위원** 여러분은 합의해 주지 않아요.

○**주진우 위원** 아닙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한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특검에서 여야 합의를 계속 고집했던 이유는 공정한 수사체계 때문이거든요.

○**서영교 위원** 여러분은 윤석열을 보호하지, 합의하지 않아요.

○**주진우 위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지정한 재판장이 한다라고 하면 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하고 이미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을 지정해서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은 절차나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라고 하면 예외성이나 보충성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면 그때 다시 특검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설특검법 현재 안은 중복수사 위험성과 앤드 수사 주체를 결정하는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이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유상범 위원**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영교 위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게 정치적인 얘기입니까?

○**유상범 위원** 법률적인 얘기를, 법률적인 문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성윤 위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영교 위원** 무슨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런 말을 하는지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안 들어오는 게 나아요.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이성윤 위원** 오늘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진우 위원** 법치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그날 투표하러 들어온 이유도 한동훈 보호하러 들어온 거구면요, 윤석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서영교 위원**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지금 여기 정치 논쟁하러 소위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이거 막으려고 소위에 온 거잖아요.

○**유상범 위원** 이것이 막아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몰라서 들어온 거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논의에 참여는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서영교 위원** 그런 발언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없을 겁니다’라는 믿음을 주셔야지요, 여당도.

○**주진우 위원**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야당이 이렇게 목소리 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대통령에 대한 배제가 다 이미, 대통령 스스로 내려놨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게 배제가 된 겁니까?

○서영교 위원 뭘 배제가 돼요, 여러분이 보호하고 있지?

○유상범 위원 누굴 보호해요?

○서영교 위원 여러분이 보호하고 있는 거지 뭘 배제가 돼요?

○소위원장 김승원 잠시만요.

전현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전현희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주진우 위원님이나 유상범 위원님 두 분 말씀 들어 보면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분명히 위법·위헌이다 이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위헌과 위법을 자행했다 그리고 사실상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면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인 계엄령에 근거해서 계엄군이 국회를 찬탈하고 헬리콥터나 중무장된 그런 병력을 동원했다 그러면 무효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내란을 범한 대통령, 즉 내란수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탄핵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탄핵에 반대하니까 이 위험한 대통령, 범죄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자리에서 퇴진시키는 방법은 현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오직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저지가 됐고 그렇다면 그 진상을 수사로 명백히 규명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방법도 현재로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밖에 없는데 현재 검찰의 수사를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명품백 수수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 검찰입니다. 그런 검찰에게 대통령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국민들한테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환경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경우에도 경찰의 수뇌부가,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이 계엄에, 위험한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한 경찰에 의한 수사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범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그런 수사기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이런 현실에서 유일한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내란 범죄의 전모를 밝히고 수사를 할 필요성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고 특검을 임명하는 것도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은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이해충돌을 떠나서 자신의 내란 범죄를 덮으려는 수사방해 의도가 명백히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불참하고 옹호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영향권에서도 특검 임명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란 범죄를 확실하게 수사하고 그 전모를 살살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정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삼자인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에 어긋난다든지 헌법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요. 박근혜 전 대

통령 탄핵 때 배신자 낙인이 찍혀서 안 된다, 보수가 궤멸할 수 있다 이런 우려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완벽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적인 사유라고 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범죄라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가반역죄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병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조장하려고 했던 외환유치죄의 범죄도 저지른 그런 의혹이 현재 있습니다. 실제로 병력을 동원한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이나 그 주변부에서 원점타격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뭔가 국지전을 야기해서 외환을 유치해서 그걸 기화로 계엄을 발동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시시각각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가장 위기에 몰려 있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윤석열 씨가 최후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수단으로 여전히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런 제2의 내란 사태, 쿠데타 사태를 막을 의무가 있다, 그것은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예외가 아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이 내란 범죄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진짜 참담합니다. 제가 정치생활 얼마 하지 않았지만 국회에 왔을 때 여당 위원들 늘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넉 달 전에 이미 ‘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당 위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 300명을 어떻게 다 체포하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이 양심에 있는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소리를 듣고 정말 시속 140km로 달려서 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막히고 그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할 때 시민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상황을 모를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이 국회의원 신분증을 제시해도 입장장을 안 시키는 겁니다. 국회의장님은 담을 넘어가신 것 알고 계시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 와서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담을 뛰어넘게 경찰을 막아 준 겁니다. 저도 시민 세 분이 들어서 올리고 맞은편에서 시민 세 분이 받아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왜냐? 빨리 150석을 만들어서 비상계엄 해제해 달라고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국회 본관에 들어와 보니까 헬리콥터 들어오고 공수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와 있는 시민들, 언론인들, 국회 보좌진들 어땠습니까? 국회 보좌진들은 경험이 많은 10년 차 보좌진들을 모이라 해 가지고 소파로 막고요 언론인들은 그 현장을 똑똑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언론인들, 시민들이 막아 가지고 계엄군들이 진압을 못하게 했어요. 계엄군들이 실탄을 가지고 왔고요 야간투시경까지 가지고 왔어요.

저희들은 시시각각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계엄사 끌려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고문받겠다. 어떻게 하겠냐. 각오해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여당 위원님들도 계셔서 안에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날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어 보세요. 이런 상황을 보고 계엄군을 비호하고 윤석열을 비호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야당 혼내 주려고 한번 해 봤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건데요. 오늘 보도를 보면 방첩사가 말이에요 6개월 전부터 경찰 국수본하고 치열한 합수본 설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이틀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요원들이 체포조를 만들어 가지고 무려 10월 달부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12월 3일 당일 날은 여기에 와 가지고 3일, 4일, 5일 동안 뮤를 데를 찾아놓고 12월 4일 날 새벽까지도 여기서 뮤었다는 겁니다. 그날도 여기 사복 체포조가 100명이 넘게 와 있었다는 거예요.

국회에만 무려 700명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 내는 데는 시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의 힘이 컼어요. 그때 법무부, 경찰 뭐 했습니까? 여당 뭐 했었습니까, 여당?

탄핵 무산에 대한 외신 주요 반응을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민의힘, 나라보다 당 중시한 죄악의 결정을 했다’, 니혼케이자이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별기’,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했냐면 ‘국민적 분노, 여당 전체를 불사를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더 많은 탄핵 요구 시위 촉발할 것’ 이렇게 했어요.

오늘 차관님 나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8월 16일 날 독립운동 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8월 14일까지 내동 일제에 부역하다가 8월 15일 광복되고 광복된 다음 날부터 독립운동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검찰이 지금 그 모양이에요. 12월 4일 날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법제처장이 안가에서 모였어요. 송년회 했다고요?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장, 서울청장 고발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어요.

○서영교 위원 공범이에요.

○이성윤 위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수사 보고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특별수사본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당 대표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 관계가 있다는 것?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8월 14일까지는 김건희에 대해서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주고 무혐의를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던 검사들이 왜 갑자기 나서 가지고 이번에는 윤석열 수사한다고 난리입니까? 윤석열이 힘이 빠지고 내란죄가 명백할 것 같으니까 검찰, 경찰, 공수처 달라붙어 가지고 먹잇감으로 뜯어먹으려고 달라붙는 것 아닙니까? 검찰의 하이에나 같은 본성이 또 드러난 거예요, 평소에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제발 8월 16일 날 독립운동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앞에 검찰이, 법무부가 더 우습게 됩니다.

저는 이 수사요구안에다가 한 가지를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첩사가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를 동원해서 철저하게 체포조를 10월 달부터 운용한 자료가 나와 있고요.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의 대표, 국회의원 등을 모두 체포해라’, 체포 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

거를 위해서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답니다.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러자 방첩사 요원들이 사복 차림으로 그날 국회에 와 가지고 그다음 날까지 계속 있었고요. 탄핵 의결하는 그날도 방첩사 요원들이 사복 차림으로 와 있었다고 그립니다. 방첩사 요원들이 탄핵 시위 현장에도 와 가지고 시위를 부추기고 또 폭력을 부추기고 그런다는 침보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말 역사를 망각한 인물입니다. 과거에 보안사, 기무사의 만행을 모르고 또 이런 것,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도 또 망각하고 다시 전두환 정권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수사 대상에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를 추적해 달라라고 요구했고 체포를 요구했고 사복 차림으로 시위 현장에까지 와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시위를 선동을 했다는 의혹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저도 추가 30초만……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한 분씩……

○전현희 위원 오늘 좀 전에 최고위 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하나 폭로한 게 있는데요. 제보를 받아서 폭로했는데 그 내용이, 여러 특수부대가 동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HID 특수부대 여기는 요인 저격, 암살 이런 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HID 부대가 계엄 몇 달 전부터 동원이 돼서 사실상 저격조를, HID 부대가 동원이 돼서 훈련을 받고 국회 의원 체포조를 운영했던 그런 것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확인을 해서 범위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지금 주체가 누군가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의혹 사건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바꾸자는 요청이 있었고, 저도 여러 가지 보도에 의하면, 동영상이라든가 또 계엄에 투입되었던 사람들의 양심선언에 의해서 충분히 범죄 혐의 사건으로 바꿔도 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조 그다음에 위치 추적 등을 요청한 사항 등도 근거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추가해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모으지 않고 당사로 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어렵게 하는 것에, 그런 것을 통해서 방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 수사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까지 넣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충분히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이 아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소위원장 김승원 들어 보세요. 아직 제……

그다음에 HID 저격은 그러면 뭘까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전현희 위원 일단 HID를 넣어 주시고, 한번 김병주 의원님께 확인해서 자료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보도 나온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관련 사건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에?

○**전현희 위원** 'HID 등 관련 사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관련 사건으로 들어가도 될……

○**유상범 위원** 그게 10호, 11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관련 사건으로 들어가서 수사는 될 것은 같은데요.

○**전현희 위원** 그러면 HID만 적시해서 'HID 등 관련 사건' 이렇게 하시면……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것은 어차피 이 안의 10호, 11호에 그 부분이 조사되고 제보를 했으니까 나중에는 자연히 들어갑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제가 군대를 잘 모릅니다. HID의 지휘자는 누구일까요?

○**전현희 위원** HID는 최정예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상, 요인 암살, 저격하는 그런 부대라고 하는데 그 부대까지 동원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유상범 위원** 부대명을 잘 모르시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인형 방첩 사령관 부분은 10호, 11호에 의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꾸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것도 관여된 게 없는데 방조 혐의로 넣는다는 것은 여당 전체를 쿠데타하겠다고 하는 얘기랑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그것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것은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팩트 체크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넣고 보자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현희 위원님, HID는 여기 몇 항에 넣을지 또 어떻게 구성할지가 아직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것은 내용이 있으시면 전체회의에서 말씀해 주시면 전체회의에서 한번 다 논의하도록 하고요.

○**전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님에 대해서……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저는 평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마음은 아픕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국민의 최대 공적은 윤석열 그다음이 김용현과 추경호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추경호 의원을 놔두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특검을 추진하는 취지에도 안 맞고 국민들 보기에도 공감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위원**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동으로 150명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가지고 특수부대가 들어온다 이런 갈등이 있었으면 모

르는데 추경호 대표가 그 결정 할 당시에는 이미 15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말씀이지요, 그 말씀은…… 저도 그 부분은 고민을 했는데 요새 제보도 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니까 그것을 뺀다고 할지라도, 150명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엄군에 의해서 끌려가기를 바라면서 본회의 시간도 30분을 늦춰 달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히 150명을 넘는 것과 200명을 넘는 것은 유사시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법한 계엄을 막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 야당 의원들만 있는 것과 여당 의원들이 있는 것은 정부가 보기이나 정권이 보기이나 국민들이 보기이나 그것은 정치적 상징적인 의미나 그것의 예방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 150명 넘었으니까 괜찮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여당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유상범 위원** 여당 의원들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18명이나?

○**주진우 위원** 저희도 있었어요.

○**박균택 위원** 그분들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지 그분의 지시를 받고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아니, 저는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주진우 위원** 저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방해받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올 때.

○**서영교 위원** 추경호 대표는 원내에 있으면서도 안 들어왔잖아요. 본청에 있으면서도 안 들어왔잖아요.

○**박균택 위원** 그리고 본인은 본청에 있으면서 당사로 가라고 했던 얘기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서영교 위원** 보호할 것을 보호하세요. 본청에 있으면서 안 들어간 거잖아요.

○**박균택 위원**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못지않게 추경호 의원이 3인방으로 포함이 돼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문안으로 정리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다수의 사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예, 문안 제시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HID를 수사요구안 ‘특전사, 수방사 특임’ 이렇게 열거한 여기에 ‘특전사, 수방사 그리고’……

○**소위원장 김승원** 몇 항이시지요?

○**전현희 위원** 심사자료 4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사 대상 몇 호?

○**전현희 위원** 5호에 특전사 그리고 수방사 그리고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방첩사 그리고 여기에, HID는 정보사령부 특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사령부 특임대 HID 등’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HID가 구체적인 무슨 행동을 한 게 있나요?

- 전현희 위원 훈련을 사전……
-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이야 지시받아 하는 것이고……
- 전현희 위원 그래서 대기를 하다가……
- 유상범 위원 거기가 국회로 왔습니까?
- 전현희 위원 국회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유상범 위원 국회로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 소위원장 김승원 국회에 투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투입은 된 것으로.
- 서영교 위원 투입을 하기 위해 계속 준비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있었다면 더 무서운 일이 사전에 예방됐을 뿐이지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다 수사 대상이어야지요.
- 소위원장 김승원 전문위원님, 일단 이것도 넣어서 해 주시고.
- 전문위원 김성완 예.
-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어떻게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 전문위원 김성완 예.
-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토론을 다시 수사 대상에 담아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성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호부터 8호까지의 문구 마지막 부분의 ‘의혹 사건’을 ‘범죄 혐의 사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국회의장과 주요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였고 방첩사 요원들을 사복 차림으로 국회에 배치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하나를 3호 다음에 4호로 넣으면, 그 관련자들에 대한 게 1, 2, 3호로 돼 있기 때문에 4호로 넣는 게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님과 관련해서는 10호로 두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건의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건의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10호로 두는 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5호에 지금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그다음에 방첩사령부나 정보사령부 특임대 이 부분을 넣어서 문구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 부대들을 넣어서 포함할 수 있게 문구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9호부터 11호까지는 호나 이런 것들이 다 변경되게 되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토론하신 내용을 다 담았는데요.

- 유상범 위원 추경호 원내대표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추경호가 해제 건의를 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했는데, 이미 이게 12시인데 11

시 반에 계엄군이 출동하고 나서는 국회의원 누구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일찍 도착하셔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요청을 했는데,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의원들을 본회의장에 들어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당사로 가라 그래서 나도 12시가 다 돼서 왔기 때문에 당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성윤 위원** 의원이 모여야 할 데가 국회 본회의장이지 어디로 갑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모여서 있지만 계엄군이 와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라니까.

○**이성윤 위원** 시도를 해야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짧게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표결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이 추경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당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라고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빼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합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 좀 얘기……

○**소위원장 김승원** 전현희 위원님께서 먼저 요청하셨는데요.

○**전현희 위원** 물론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국힘 의원들을 당사로 모여라, 그래서 사실상 국회에 진입을 할 수 없도록 한 의혹이 부분이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인지 수사로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상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저도 포함해서, 저는 국회 담을 넘다가 지금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아직 낫지 않고 계속 흉측하게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부분이 부상을 입고 또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에 계엄군이 이미 애워싸고 있고 본청에 진입한 상태에서 저는 들어갔거든요.

○**소위원장 김승원** 짧게 해 주시지요.

○**전현희 위원** 저도 죽을 수도 있다, 체포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에 불과하다 싶고요.

추경호 대표의 문제점은 당사로 피신시킨 것 외에도 당시에 동시에 국힘 의원들을 당사로 가라 이러면서 국회의장에게 의결을 연기해 달라, 시간을 좀 늦춰 달라 하면서 사실상 계엄군이 본청 본회의장에 진입해서 의원들을 체포해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려고 했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저는 알리바이상 말씀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12시입니다. 12시에 도착했고 그 시간은 유상범 위원님하고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찾아보게 되었고 그 공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저도 온몸에 명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 의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열어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라 못 들어갔다 이거는 알리바이상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들었던 것으로는 그때 본회의장에 들어온 의원들이…… 언론인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추경호가 자꾸 당사로 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헛갈렸다, 정말 분노한다, 이걸 국힘당 의원이 언론인 통해서 얘기한 걸 제가 기자들한테 받았거든요. 여기 기사도 나와 있지요. 그런 시간은 훨씬 더 전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추경호 의원은 그때 원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내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저는 전현희 위원님 말씀처럼 불편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이름으로 탄핵을 막고 정치라는 이름으로 비상계엄과 군인이 들어와서 언제 총을 쏠지도 모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을 정치라고 하면서 의원총회 그리고 정치인들이 말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안 된다, 정치인들도 이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여차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법사위 하다가 국방부에서 북한에, 평양에 정찰기였다 그래서 법사위 잠깐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언가 누가 보낸 거라는 것 드러났습니까? 김용현이 보냈다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날은 마치 처음 듣는 것인 양……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안 보낸 게 맞잖아’라고 결론을 내려고 그랬는데 김용현 왈 ‘우리가 안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도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NCND입니다’라고 결론 냈잖아요. 여차하면 전쟁 일으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에서 내려오는 전단지, 거기 보낸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거 다 전쟁을 일으키……

우리가 탄핵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잘못한 게 있어서 탄핵을 하지만 그대로 직무를 하게 놔두면 전쟁을 일으키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는 거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치인들도 이제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표결하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4호 추가 의견 있습니다.

제가 깜빡 놓칠 뻔했는데, 4호에 보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분명히 집어넣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표현을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있습니다. 표결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유상범 위원** 이것 빼자고 했는데 기어코 넣는다면 내가 어떻게 찬성을 하겠어요?

○**소위원장 김승원**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위원 총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11시08분)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2항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표 왼쪽을 보시면, 개정안은 각급 법원 판사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보고입니다.

우리나라의 법관 수, 재판 지연 문제 그리고 다수의 법원이 신설 및 신설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판 지연의 문제는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 재판연구원 정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정원을 9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4페이지에는 관계 기관 의견이 요약되어 있고 판사 정원 변동 추이 등 심사에 참고하실 자료는 6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법원과 검찰 업무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증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판사·검사의 증원은 함께 증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가 증원되면 형사재판부가 증설될 것이고 신설되는 재판부에서 공판을 담당할 검사도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판사와 검사는 60년간 항상 함께 증원되어 왔습니다. 현재 검사 증원법도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은 미제 사건의 누적이라고 보고 있고 재판 지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미제 사건의 획기적인 감축이 필요합니다.

올해 들어 판사님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건 처리를 열심히 해서 처리 건수가 아주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추가 인력의 투입 없이 처리 사건 수의 증가만으로 일정한 한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신속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인데 현원이 3206명으로 결원이 8명이고요. 지금 현원 대비 99.75%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신규 법관 임용을 위한 임용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와 같은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법관 임용 절차가 어렵게 된다는 점도 말씀을 올리겠고요.

지난 9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셔서 경륜 있고 능력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입법취지가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법관 증원이 병행돼야 된다는 점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 법관 정원법은 21대 때도 일단 정부 간 다 합의가, 그러니까 기재부와는 합의가 되신 거고……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재부하고 합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저희가 기재부하고 합의를 해서요 370명을 증원하는 데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1대 거의 끝날 무렵에 1소위에서는 법관 정원법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그것이 회기에서 불발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22대 때도 동일하게 370명을 전제로 해서 기재부하고 10월 중순부터 협의를 진행했고요.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현재 까지 특별한 이견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21대 법사위에서도 소위는 통과됐는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상정이 안 돼서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하고 동일한 숫자의 증원을 지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혹시 토론할 위원님 계신가요?

○**유상범 위원** 아닙니다. 21대 때 저희가 이미 다 동의를 했었고 사실 의결만 못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의 없습니다. 증원하는 게 맞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짧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차장님, 법관 증원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선 법관들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월 달에 내부 의견 조회한 적 있지요? 말하자면, 법관 인사 내년 1월에 있나요, 2월에 있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내년 2월 달……

○이성윤 위원 2월에 있을 인사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을 상대로 해서 의견 수렴한 적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 수렴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주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말씀……

○이성윤 위원 고법 법관을 지법원장으로 인사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법원장을 종전에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했는데요 그런 방법보다는 일선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중에……

○이성윤 위원 일선 법원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가 과반수였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종전의 제도를 바꾸자라는 데는 다수의 의견이 찬성을 했고요. 다만 지방법원장을 누구로 보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법 판사나 고등 부장도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다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고등 부장도 지법원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어요.

법관을 늘리는 건 좋은데 지금 국민과 시민단체가 합의해 가지고 고등 부장 승진제 폐지했지 않습니까? 일선 법관들은, 지법 법관들은 또 판사 출 세우기 할까 걱정됩니다. 판사, 법관을 늘리면 대법원장이 또 출 세우기를 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년 2월에 법관 인사에서 고법 법관을 지법원장으로 보내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선 청에서는, 일선 지법·지원에서는 사실상 고법 부장 승진제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아요. 그렇게 많이 늘린다면 이거 늘려 주는 것에 저희가 거의 방조하는 셈이 되거든요. 고법 부장 부활 절대 없다 그다음에 진짜 규정대로 고법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대로, 지법 판사들은 지법 법관으로 간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고법 부장 제도가 부활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말은…… 사실상 부활 않지요, 법에 안 되어 있는데. 법에 금지하도록, 법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폐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관들이 소신 있는 판결을 못 하게 되는 우려가 있고 이렇게 법관을 또 늘려 주는 게, 수백 명을 늘려 주는 것이 또 출 세우는 판사만, 법관만 더 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년 2월 인사를 앞두고 고법 부장 승진이 없고 진짜 이런 제도 부활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제도 운영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법관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고 저희들도 많고 실제로 저희한테도 일선 법관들이 많이 의견을 줍니다. 이것 사실상 고법 부장 승진 부활하는 제도다, 절대

막아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해요.

재판 지연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재판 지연하는 것을 국민이 탓하는 것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이 제대로 셨냐는 말씀이에요.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그렇게 무도한 수사를 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무려 구십몇 %였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법관 수들려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1년에 폐지된 고법 부장 승진제 다시 부활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다시 표류할 가능성 있어요.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부 의견 수렴해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해 가지고 선언하세요. 현 대법원장이 오셔 가지고 그걸 부활하려는 짐새가 너무 보인다, 그걸 반대하는 일선 법관들 특히 지법 법관들이 많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안도 좌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사법부의 독립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독립도 잘 쟁여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고요.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법안 관련해서,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압수수색당하는 국민들의 심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고통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고문 기법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데리고 와서 두들겨 팤다면 요새는 장기간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 본인의 개인적인 사생활도 모두 수사관에게 공개되는 그런 걸 통해서 고문 이상의 치욕과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증원된 법관이 국민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본권을 지키는 데 많이 투입이랄까, 아무튼 그렇게 배치되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새겨듣고 제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리고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6·3·3을 준수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지요. 그런데 선거법 재판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5만 페이지, 10만 페이지 같은 재판을 6개월, 3개월 안에 해라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재판부에도 부담, 무리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판부의 어떤 독립성, 독자적인 진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도 배려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재판부에서 협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손을 들)

○소위원장 김승원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서영교 위원 아닙니다.

통과시키고 법원에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영교 위원님 짧게 그러면 말씀해 주시지요.

○**유상범 위원** 서영교 위원님, 괜찮으시면 우리가 긴급 의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안은 다툼이 없으니까 법안 하시고 나중에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아니, 이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관 증원법도 발의했고, 제가 쭉 보니까 법원에 판사가 8명밖에 티오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행정법원, 민사법원 이쪽에 법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은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처럼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죄로 지금 국가가 엄청난 위기인 상황 속에서 경찰이 군 장성 4명에 대해서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했더니 법원이 기각시켰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김용현도 구속시키고, 김용현이 셀프 소환돼서 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의문투성이인데요.

저는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가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그런데 통신사실조회 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사실은 영장과 관련된 부분은 법원행정처에서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예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보도에 의하면 일부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만 사실은 구속영장이 아닌 수사가 진행 중인 압수수색영장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그게 기각됐다는 보도화가 되는 건 좀 이례적이긴 했고요. 나중에 언론에 밝혀진, 언론에서 일부 보도한 것에 따르면 저희도 진위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미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복 청구여서……

○**서영교 위원** 지금 중복 청구여서, 검찰이 영장한 거 발부됐기 때문에 중복 청구여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라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 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문제점은 수사기관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각자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지금이 무슨 상황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비상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서영교 위원** 비상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검찰이 했는지, 검찰이 지금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기구입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검찰이 그 통신 내역을 갖고 가면 경찰하고 공유합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이에요. 국수본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이 그 통신사실 내역조회조차 영장을 기각해 버리면 뭘 하라는 겁니까? 검찰이 이걸 갖고 가서 경찰에게 줍니까? 그거 그렇게 느리게 수사하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말씀은 제가 아까 따로도 여쭤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부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 보고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체크하셔야지요. 지금 곳곳에서 영장이 청구되어 들어오고, 검찰에서 또 들어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가야 합니다. 피의자들이 언제 증거 인멸할지 모르는데, 김용현이 증거 인멸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핸드폰 바꾸고? 다 핸드폰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핸드폰을 바꾼 겁니까? 명태균 때문에 바꾼 거라고 기자회견 하더니 이런 복안이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곳에서 요구하는 영장들이 최대한 발부돼야 돼요.

그런데 김승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누구에게는 엄청난 영장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제2의 고문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영장이 바로 기각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사후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검찰이 했다고 안 줘요? 공수처가 했다고 안 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증거를 최대한 곳곳에서 확보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통신사실 내역조회를 떠나서 모든 거 압수수색하고 신변 구속해야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영장 기각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면 향후 여기 부역하는 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 않게 해 주십시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3)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2)

(11시24분)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3항 및 4항, 이상 2건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표 왼쪽을 보시면, 곽규택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은 음주운전자가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양 개정안은 아래 표와 같이 도로교통법 인용 조문과 시행일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 검토보고입니다.

술타기 수법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조문과 시행일은 최근 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의 조문과 시행일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려는 취지에 공감하고 의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2025년 6월 4일에 맞추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미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되 수정의견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 관계 기관에서 이의가 없고 수정의견도 제가 봐도 타당한 걸로 보이니까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및 4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8)

(11시26분)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이상 3건의 국가배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신장식 의원안은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을, 엄태영 의원안은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 및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을, 김민석 의원안은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 및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본인 또는 가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사·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한 군인 등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이 제한되는데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경우 그 가족이 유족에 해당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바 있어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법이 배상을 제한하는 대상에 유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 개정은 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상 군인 등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은 헌법 제29조제2항에서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등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상 군인 등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하는 내용은 공상 군인 등 가족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위자료에 대한 적용례 부분입니다.

신장식 의원안, 엄태영 의원안, 김민석 의원안은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이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심의 중이거나 소송 중인 배상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엄태영 의원안, 김민석 의원안은 공상 군인 등 가족 및 공상 군인 등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심의 중이거나 소송 중인 배상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개정안으로 새로 청구할 수 있게 된 권리이므로 이를 누구부터 적용할지는 입법정책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이 법 시행 전 전사하거나 순직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은 위자료를 인정하되 같은 시기에 전사하거나 순직했더라도 이 법 시행 당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 않은 사건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아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적용 대상을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엄태영·김민석 의원안에 따른 공상 군인 등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현재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 시점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전사·순직 군경 등 유족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법적 안정성 등 법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유사 입법례 및 국가 재정 등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장식 의원안 부처처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예외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만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개정안 적용 범위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소급 적용 여부 및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나 군인·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국가배상법 규정이 국가 재정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았음을 고려하면 기본권 침해요소를 제거하는 개정법

의 소급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 수정의견에 따를 경우에도 오랫동안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가 개정법 시행 이후 사망 원인이 밝혀져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개정법이 적용 가능하도록 법원행정처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공상 군인 등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현재도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오히려 기존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수정의견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 29조 2항에 의하면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원칙이라고 알려진 규정인데 기본적으로 이 규정 자체는 애초에 국가배상법에 있었던 조항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직후에 헌법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헌법 규정으로 들어온 이후부터는 내용상 위헌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헌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학계에서는 이것은 이중배상금지가 아니고 이른바 배상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많이 제기됐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본인과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의해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유족에 대해서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청구권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석 의원안에 보게 되면 공상을 당한 본인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헌법 규정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과규정과 관련돼서는 현재 법무부 수정안은 기본적으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이 법 시행 당시에 순직 여부를 둘러싼 법적인 심사·심의 등과 관련된 논란이 있거나 현재 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부 수정안에 의하면 기준 자체는 좀 간명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전사·순직한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상 군인 등의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이나 공상 군인 등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입장 제기한 것처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에 대한 적용례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취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 개정의 취지가 소급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군 의문사 사건과 같이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망 원인이 밝혀져서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랄지 실종되어서 사망 여부가 불분명하다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망 시점과 사유가 밝혀져 순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에 의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기대치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까지 보호를 한다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전사하거나 순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수정의견을 제안했다는 취지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페이지 관련된 것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느 기관이 더 넓게 인정하는 거라고 판단을……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원이 더 넓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이 더 넓게 인정하는 취지이긴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신장식 의원안에 비해서도 넓으신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의원안이 간명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유상범 위원 좋긴 한데 개정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현재에서 유족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사실 위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하는 것도 현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입법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현 단계에서는 유족에 대한 위자료 범위를 인정하는 그것을 정하고 또 그 범위를 양 기관에서 말한 대로 사실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범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마 법원의 수정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수정안대로 정리를 하고 공상 및 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재에서 위헌 결정한 범위랑 전혀 관계없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여기서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공상까지 넓히는 것은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 위헌 취지에 따라서 법률 개정을 한 신장식 의원안을 중심으로 하되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법원행정처 수정의견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유상범 위원 지금 양 기관에서 법원행정처 수정의견안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폭넓게 인정한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기준을 간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안이 보호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의견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법원행정처안으로 수정하고 정리합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 아니, 내가 외려 들어오기 힘든 사람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안내면 어떡해요, 가만있고?

○**서영교 위원** 무슨 말이에요?

○**유상범 위원**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누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이 부분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시간이 의총 있다 그러니까 안 하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공상도 엄청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제가 보기엔 그 사례들을 좀, 엄태영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이 공상에 대한 것도 가지고 오셨는데 다음에는 이 사례로, 사실은 살아 있으면서 다쳤는데 이 가족에 대한 위자료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위원이 좀 검토하셔서,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지만 사실은 지금 사례로는 순직하거나 이렇게 된 군인에 관한 사례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지만 군에 보냈는데……

지금과 같은, 비상계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왔다가 순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치고 이랬을 때 국가가 배상해 줘야 되고 가족에게 위자료 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급한 상황이라 그렇게 하시는 거에 동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우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과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승원 박군택 서영교 유상범 이성윤 전현희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김석우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